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7호

2017. 6. 26.

건 명	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세무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06. 12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06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되고,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됨에 따라,

○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에 이관하는 한편,

○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○ **「지방세기본법」 외에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하위법령 추가(안 제1조)**

▸「지방세기본법」 ➜ 「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」으로 개정

○ **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(안 제2조)**

▸ 안 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➜ 안 제2조(법령과의 관계)로 개정

▸ 부과·징수 ➜ 부과·징수(부과·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개정

○ **「지방세기본법」과 관련 없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내용 삭제(안 제2조)**

▸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➜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로 개정

○ **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·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**

▸ 부과·징수권한 위임대상 ➜ 읍·면·동장 및 소속공무원

○ **자동차 등록사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·수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차세 신고사무 관련 서류 송부기간을 개정함(안 제4조)**

▸ 사용본거지가 논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(안 제4조제1항)

▸ 자동차세 신고사무 관련 서류 송부기간 개정(안 제4조제2항)
14일 이내 ➜ 10일 이내로 개정

○ **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)**

▸ 서류의 송달방법 ➜ 세무공무원이 교부, 우편, 전자송달(안 제5조제1항)

▸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➜ 일반우편 가능(안 제5조제1항)

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 송달 ➜ 통장·이장·반장이 송달가능(안 제5조제2항)

▸ 통장·이장·반장의 서류 송달 ➜ 사전 교육 실시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급 가능(안 제5조제3항)

○ **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**

▸ 예탁 금고 ➜ 논산시금고

○ **현행 조례 제8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**

▸ 위원회 명칭 ➜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(안 제7조제1항)

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참여범위 제한 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(안 제7조제2항)

○ **현행 조례 제7조(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 규정을 삭제하고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「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함**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되고,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됨에 따라,

○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에 이관하는 한편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, 제6조, 제28조, 제30조, 제143조, 제147조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,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8호

2017. 6. 26.

건 명	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(세무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06. 12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06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

○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○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, 제명을 「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로 함(안 제명)

○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
○ **종전 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에 규정된 「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」 규정을 삭제하고,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(안 제3조)**

▸ 「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」

☞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*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

*** 지방세 : 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함**

○ **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**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

○「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9호

2017. 6. 26.

건 명	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(세무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06. 12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06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

○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·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

○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근거법령

▸ 「지방세기본법」 152조,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○ 출연기관

▸ 기 관 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

▸ 대표/소재지 : 허동훈 / 서울 영등포구 (정원/현원 : 35명/30명)

▸ 주요사업 :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
○ **출연 예정금액 : 8,575천원(시비 100%)**

▸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
※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7,167,485천원 × 1.5/10,000 = 8,575천원

○ **출연계획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년			2018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시비(100%)	7,555	7,555	0	**8,575**	1,020

□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

○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·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

○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, 지방재정법 제17조,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